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87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이정문・이기헌・이학영

민형배 · 김남근 · 이연희

김원이 · 한민수 · 채현일

어기구 • 문진석 • 이인영

차지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종류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을 다르게하고 있음.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은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은 인구수에 90원을 곱한 금액임.

선거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이 상이한 것은 선거기간이 대통령선거는 23일, 그 밖의 선거는 14일로 차이가 있으며, 선거마다 선거운동 대상이 되는 유권자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임.

그런데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이 있는 경우 대통령선거와 보궐선거등이 동시 실시되는데, 이 경우 보궐선거등의 선거기간이 대통령선거를 따르게 되어 보궐선거등의 선거운동기간이 대통령선거와 같이 23일이 되

는 반면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상향 조정되지 않아 선거운 동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궐선거등이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늘어난 선거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궐선거등이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해당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늘어난 선거기간에 상당하는 수준의 금액을 더한금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적용례) 제1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선거기간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3
	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궐
	선거등이 임기만료에 따른 대
	통령선거의 선거일 또는 대통
	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
	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나는 경
	우 해당 보궐선거등의 선거비
	용제한액은 제1항 각 호에 의
	하여 산정된 금액에 늘어난 선
	거기간에 상당하는 수준의 금
	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